

1. 제정 이유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대유산 지정 및 해제 절차, 등대유산 정기조사 시기, 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 서식, 조성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함.

2)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함.

나. 등대유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1) (지정)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 6개월 안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함.

2) (해제) 해당 등대유산이 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 해제 이유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시 및 통지에 관하여는 등대유산 지정 관련 절차를 준용토록 함.

다. 등대유산 정기조사(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5호서식)

등대유산 정기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정기조사는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방법으로는 현지조사, 항공기·인공위성·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조사 또는 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 서식 규정(안 제14조, 별지 제6호서식)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 요청서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정함.

마. 조성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1, 별지 제7호서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성계획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 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규정함.

바.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서식(안 제18조, 별지 제8호서식)

조성구역 지정·고시 당시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규정함.

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확인증 서식(안 제21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와 준공확인증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으로 규정함.

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22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2.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해양수산부령 제 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등대시설물등이 등대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및 범위
2.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

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등대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2. 등대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명칭과 주소
3. 지정의 이유

제6조(지정서의 교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7조(등대유산 대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대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등대유산 대장에는 해당 등대유산과 그 보호물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등대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건조물이 아닌 등대 장비·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등대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등대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등대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명칭과 주소
3. 지정 해제의 이유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등대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등대유산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0조(임시등대유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시설물등이 향후 등대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대시설물등을 임시등대유산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임시지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임시지정은 그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임시지정에 따른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제5조 전단에 따른 고시는 제외한다.

제11조(정기조사의 시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정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기조사는 등대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인공위성·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조사 또는 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사 7일 전까지 정기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등대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정기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 결과 해당 등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등대유산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내용 및 구성 항목의 완결성 확보
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3. 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 확보
4. 시설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확보
5. 현황자료의 신뢰성 확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

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를 영 제3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② 타당성 조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고지·납부 및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증표)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2. 사업 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3. 사업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4. 연도별 투자계획
5.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7.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3. 사업 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따른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목적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확인증)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기억장치 등 전자적 정보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
2. 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최초의 기본계획을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수립한다.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의 기준(제16조 관련)

1. 경제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이용객 수요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분석	자료분석
나. 투자비	총사업비, 운영비, 시설 규모의 적정성 분석	자료분석
다. 경제성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분석, 내부 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	자료분석
라.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분석	자료분석

비고: "민감도 분석"이란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조성계획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관련 계획과 연계성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료분석
나. 사업의 실현가능성	1) 사업비 확보 현황 및 계획 2) 사업추진 대상지의 일반 현황 및 규제 사항,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등 3) 계획의 수립·추진 과정에의 주민 참여	자료분석
다. 지역 자원의 활용	1) 조성 대상 등대 자원 현황과 그 활용 가능성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여부	자료분석 현장조사
라.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 관리 대책	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예방 대책 수립 여부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 복구계획의 적정성 3)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계획의 수립 여부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마. 이용객 편의 및 안전성	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편의시설의 구비 여부 2) 등대해양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인력 배치계획 수립 여부 3)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객 안전대책 수립 여부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제 호

등 대 유 산 지 정 서

명 칭:

수 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 등대시설물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소유자 (관리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월일	기록자		
(세 부 사 항)						
지정번호	명칭	재료	구조·형식·형태	규격	수량	그 밖의 특징

비 고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 예시: 제2025-001호)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칭	종류	지정 번호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유자 (관리자)	발급 연월일

등대유산 대장

지정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지정일			해제일
구조			형식 / 형태
(제)작자			규격 / 크기
수량 / 면적			연대 / 시대
소재지 / 보관장소			
보호물	※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등대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		
부속(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사유			
내용 (연혁, 유래 등)			
현황			

제 00호 등대유산명 □□□□□□

관리이력(보수, 정비 등)

[illegible]

제 00호 등대유산명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등대유산지정보고서

조사일		조사대상명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유형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재질				
	수량·규모·크기				
	현재용도·기능				
	소유자(관리자)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등대유산>				
	<보호물> ※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등대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에 관한 내용 기록				
보존 관리 활용 검토	보존관리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등대유산의 지정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1. 유형: 건축유산(목조, 석조, 조적조,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기록유산(문서, 도서 등), 미술유산(회화, 조각, 공예, 비석 등 석조, 현판 등), 과학유산(장비·용품, 과학기기 등) 등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명칭: 등대유산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합니다.
3. 소재지: 행정구역상 소재지번(地番)을 기재합니다.
4.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기재합니다.
5. 재료·재질: 등대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6. 수량·규모·크기: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페이지 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페이지 크기 등)를 기재합니다.
7. 현재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기재합니다.
8. 소유자(관리자):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기재합니다.
9.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등대유산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10. 연혁·유래 및 특징: 등대유산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11.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지정 가치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등대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등대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 기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12.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등대유산과 그 보호물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대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관리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13. 보존관리 및 활용 착안사항: 등대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제 호

등대유산조사원 신분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성 명
해양수산부

60mm×90mm[백상지(120g/㎡)]

(뒤쪽)

등대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등대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증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60mm×90mm[백상지(120g/㎡)]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변경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요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지역	조성구역명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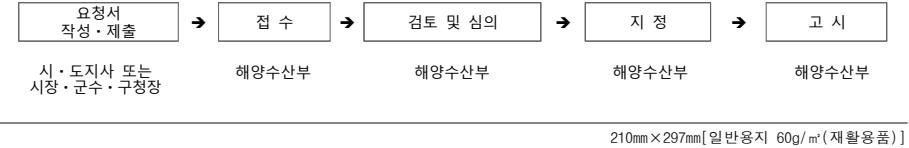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 지정·[]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조성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권리 현황 다.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라.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마. 조성구역의 관리·운영 방법 바.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사.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수수료 없음
	2.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처리절차		



(앞쪽)

제 호
증표
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60mm×90mm[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증표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기 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측량
년 월 일
사 업 시 행 자 인

60mm×90mm[백상지 150g/㎡]

공사 등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사항	행위허가 (신고)내용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토지의 분할 행위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 치			
	면적(㎡)			
	근거법령			
	허가일	년 월 일	허가권자	
	공사(사업) 진행사항	공사(사업) 진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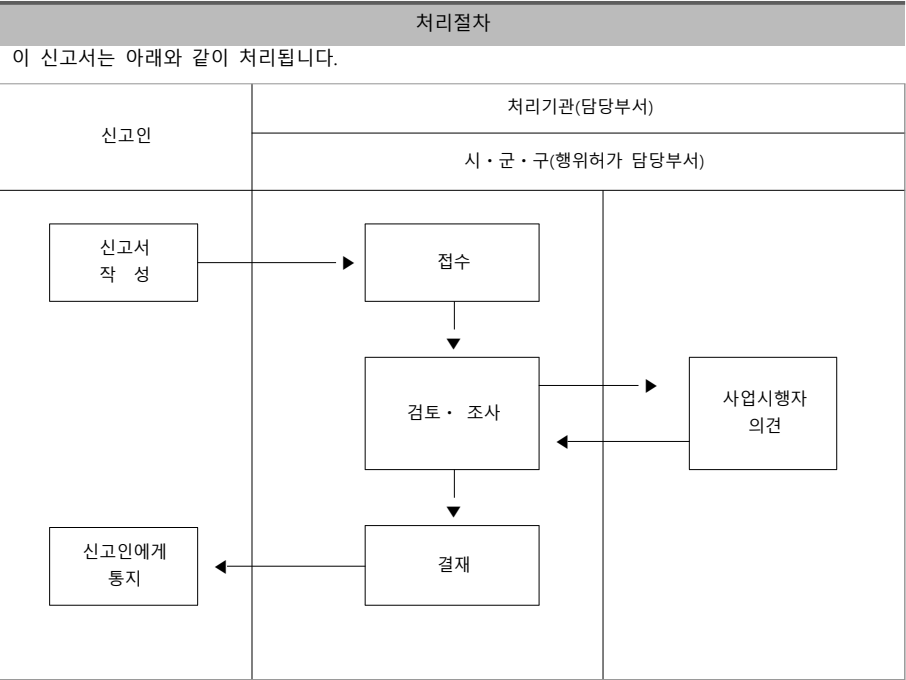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준공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고 내용	사업명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목적		
	총사업비		
	사업기간	착공 . . . (일간) 준공 . . .	
	귀속시설 내용		
	그 밖의 사항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성사업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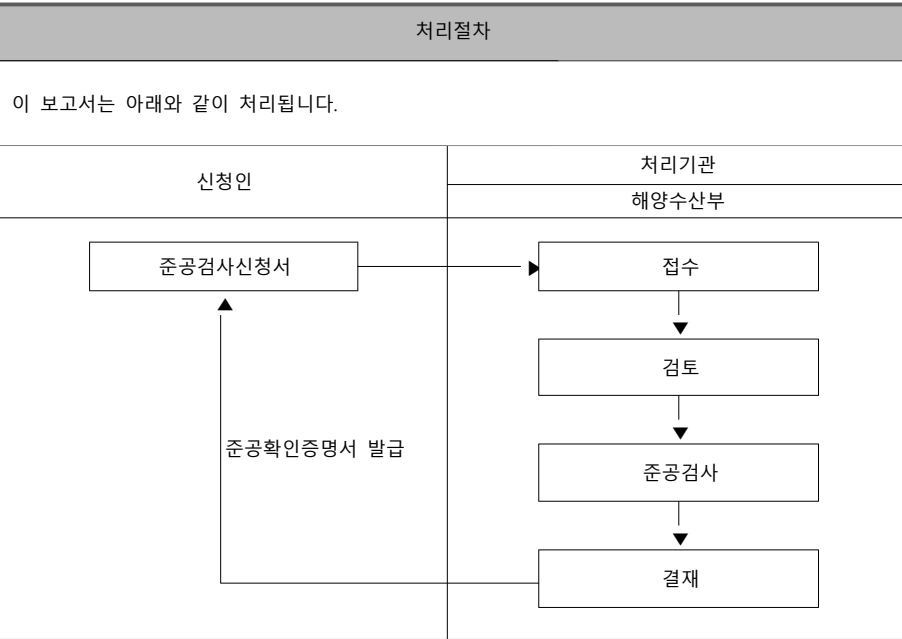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신규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 호

준 공 확 인 증

성명: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귀하가 시행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을 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1. 사업명:
- 2. 사업계획 승인일:
- 3. 위치:
- 4. 시행면적: m²
- 5. 준공연월일: . . .
- 6. 준공시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